

수사기관의 사이버검열, 현행법상 허용되는가?



글 정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1. 검찰은 사이버검열을 시도하고 있는가?

지난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공간상 대통령에 대한 모독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대통령의 지적이 있은 후, 대검찰청은 ‘사이버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실시간 사이버감시를 포함한 다양한 내용의 적극적 수사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단순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규제뿐 아니라 포털사이트의 댓글,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광범위하게 수사하여 단속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어, 이로 인해 사실상 ‘사이버검열’이 행해지는 것이고 이른

바 사이버공간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검찰이 “카카오톡이나 SNS를 실시간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도 없다”는 등의 적극적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검열 논란은 계속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수사기관의 SNS 실시간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하여 카카오톡에서 해외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갈아 타는 이른바 ‘사이버망명’ 현상이 네티즌들에게 확대되었다.

검찰의 이러한 사이버감시 계획에 대하여는 입법조사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낸 바 있고, 이러한 분위기하에 사이버망명을 막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카카오톡 대표의 감청영장 불응방침 발표로까지 이어졌다. 최근에 불거진 이러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차제에 허위사실 유포의 방지 및 명예훼손의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의 SNS 실시간 모니터링이 과연 법률상 가능한 조치인지, 그리고 네티즌들은 사생활침해를 감수하고 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이른바 사이버망명 현상은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 등에 관하여 다양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이버공간상 엔트로피는 방지되어야 한다

오늘날 인터넷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이버공간이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되는 이른바 ‘사이버 환경오염’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은 녹색환경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인터넷환경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대인의 생활이 상당 부분 인터넷, 사이버공간에서 해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의 소중한 사이버공간이 각종 불법정보와 범죄행위 등 이른바 ‘엔트로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로 심각한 환경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수많은 쓰레기정보, 즉 엔트로피로 넘쳐나 언젠가 사이버 환경재앙이 닥쳐올지도 모를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사이버공간상 대표적인 엔트로피로는 사이버음란물, 불법복제물,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명예훼손성 게시물이다. 왜냐하면 사이버공간에 욕설, 루머 등이 담긴 악성댓글을 포함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는 단순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크나큰 타격을 입히는 매우 적극적인 범죄행위기 때문이다. 또한, 심한 경우 이러한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정신적 공황에 빠뜨려 정상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공간이 이러한 엔트로피로 오염되어 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혹자는 사이버공간에 양질의 정보가 많

은 만큼 부득이한 역기능으로 쓰레기정보도 늘어나기 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궤변이다. 피해자의 크나큰 피해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이러한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 등 명백하고 고의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정부의 적극적 규제와 단속 강화만이 치료법이며 이를 통하여 사이버공간상 엔트로피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욕설, 악성댓글 등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용자의 윤리의식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 대면하며 살아가는 현실 생활공간에서조차 윤리의식이 거의 사라져가는 요즘, 하물며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근간으로 하는 사이버공간에서 그러한 윤리성을 찾기란 어쩌면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사이버공간상 윤리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사이버윤리교육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이러한 교육은 일시적이 아닌 전인교육과 평생교육의 형태로 항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사이버공간의 실효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도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을 가지고서도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네티즌들의 지속적인 자율규제 노력으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엔트로피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정부와 국민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단속하는가에 따라 사이버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엔트로피 확산으로 인한 공멸의 길로 흘러갈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3. 표현의 자유는 범죄마저 허용하는가?

언젠가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한국에서의 사이버범죄 규제사례를 몇 가지 인용한 후 한국은 인터넷검열 국가이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라는 취지로 한국의 법적 현실을 저평가하여 보도한 것을 읽은 일이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와 같은 미국법적 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미국법적 평가는 비교법적으로 참고는 될 수 있겠으나, 이러한 분석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기 때문이다.

현행 미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 규정에는 아무런 제한조항이 붙어 있지 않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단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만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한 없는 표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예컨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 등 일정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가 연방대법원 판례로 정립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 규정을 보면 미국 헌법규정에는 없는 매우 중요한 제한조항이 추가되어 있다. 즉,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미국 헌법에서와 같이

reporters

Korea Policing the Net. Twist? It's South Korea.

by LEE SAN-AN

SEOUL, South Korea — A government critic who called the president a curmudgeon on his Twitter account found it blocked. An activist whose Twitter posting likened officials to pines for approving a controversial naval base was accused by the navy of criminal defamation. And a judge who wrote that the president ("The Highness") was out to "scare" Internet users who challenged his authority was fired in what was widely seen as retaliation.

Such a crackdown on Internet freedom would be terrible, but perhaps not surprising, in China, with its army of vigilante-online censors. But the strict policing of social media in these cases took place in South Korea, a thriving democracy and one of the world's most wired nations.

The seeming disconnect is at least partly rooted in South Korea's struggle to manage the contradictions in eagerly embracing the Web as one way to catch up with the world's big economies, while clinging to a paternalist and somewhat paternalistic past. In a nation so showered by Lady Gaga that it banned her under age 18 from attending a concert, the thought of unlimited opportunities for Internet users to roast in "public," view (legal) pornography and challenge authority has proved profoundly unsettling.

"Not so long ago,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the role of the establishment, including the press, was sort of the benevolent parent of the masses," said Michael Brown, author of "The Koreans Who They Are, What They Want, Where Their Future Lies." "The government always knows best and the people were kind of stupid. I think still a bit of that is lingering on."

Critics of President Lee Myung-bak's government argue that its conservative streak is a driver behind the Internet crackdowns. But they argue that prohibitions on profanity and other online activities have also become a convenient excuse to silence critics. It is not the first time that the government has been accused of being overzealous: two former presidential aides and other officials are on trial on charges of conducting illegal surveillance of citizens.

The whittling away of hard-won freedoms is especially troubling, activists say, because the social media have become the newest frontier for rebellion, replacing the street battles of the 1980s that forced the end of decades of dictatorship.

"New media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s like Twitter have emerged as new political tools for self-government and informing people," said Chang Yoo-hwang, a fire speech activist. "The government wants to ensure a chilling effect to prevent the spread of critical views."

That situation has been noted by some international observers.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was alarmed enough last year to lecture officials on the necessity for public scrutiny in a democracy.

And this year, Reuters Without Borders listed South Korea as a country "under surveillance" in a report titled "Examine the Internet," putting it in the company of Russia, Egypt and other nations known for their intolerance of dissent.

The group said South Korea had intensified its longstanding campaign on material that appears to support North Korea, but the report said "censorship is also focused on political opinions expressed online — a critical topic in this election year."

The government denies trying to silence critics and says it spots more cases after being alerted by citizens, including those who have identified themselves as "cyberbarbarians."

한국의 인터넷검열에 관해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사 캡처
(출처 : 뉴욕타임스, 「Korea Policing the Net. Twist? It's South Korea」, 2012년 8월 12일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4항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함에서는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는 규정이 추가로 붙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국가의 헌법 규정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우리 헌법만의 특별한 규정이다. 역사적으로 이웃과 타인을 배려하면서 사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 온 우리나라 고유의 선량한 풍습이 우리 헌법에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그리고 이러한 헌법규정을 근거로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를 가진 형사법 규정들이 다수 마련되어 있다. 예컨대 형법상 모

욕죄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사이버음란물죄 등의 규정이 그것이다. 아울러 행정적으로도 이러한 정보를 포함하여 다수의 불법정보를 담고 있는 인터넷사이트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 하여금 이를 삭제하거나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의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미국 헌법적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규정은 지나친 검열에 해당하거나,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법상 아동음란물을 제외하고 사이버음란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미국에서도 건전한 사이버공간을 조성할 목적으로 과거 몇 차례 사이버음란물 유통을 금지하는 법률의 입법을 시도한 바 있으나 대법원에서 표현의 자유 위반으로 모두 위헌판결을 받고 말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같은 규정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사이버공간을 임의대로 규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하에서는 이러한 행위는 모두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법률규정이 다른 미국법에 근거하여 분석한 후에 우리 형사법상의 범죄규제가 사이버검열이고 표현의 자유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그런 주장은 마치 우리 법을 폐지하고 미국법을 그대로 가져다 쓰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혹시 나중에 우리의 풍습과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어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쳐 형사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이버음란물죄 규정이 폐지된다면 그때는 경우가 다를 것이다. 그때는 더 이상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서 규제할 수 없고 그럼에도 이를 규제하려 한다면 당연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어디까지나 그러한 행위들은 형사법상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따라서 이는 형사처벌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지난번 전기통신법상의 허위통신죄 규정이 용어의 추상성을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은 것처럼, 정치적 경제적 의견표명에 대하여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이를 범죄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은 더욱 엄격한 구성요건을 설정하는 입법적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아울러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 제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현재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타당하고 적절한 입법적 개선조치도 요망되는 바이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정치적 표현이라고 해서, 또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타인에 대한 심한 욕설이나 근거 없는 명예훼손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방치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이다. 즉, ‘범죄’를 ‘허용’할 수는 없다.

4. 사이버공간 통제를 강화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검찰이 사이버공간상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엄정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그 근거 규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사이버공간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카카오톡과 SNS 이용자 간에서 이른바 사이버망명을 시도하며 검찰의 강력한 사이버공간 통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검찰의 입장은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인터넷의 보편화와 함께 사이버공간상 명예훼손이 만연하여 그 피해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이제는 사이버공간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이 반영된 탓인지 종래 주로 벌금형 위주로 처벌해 오던 사이버명예훼손 사범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급증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총 474명인데, 이 중 80명(16.9%)은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394명(83.1%)은 약식기소되었다. 2012년에 79명(6.8%), 2013년에 114명(9.2%)에 불과하던 구공판 비율이 10%를 초과한 것도 올해가 처음이며, 2010년에는 한 명도 없던 구속기소도 올 상반기에만 7명이나 된다.

종래 벌금형 위주로 처벌하던 분위기가 이와 같이 바뀐 것은 2013년 8월 대검이 ‘명예훼손사범 엄정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부터였고, 그 후 대검은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례 없는 엄단 의지를 보여 왔다. 이러한 사이버공간 통제강화 움직임은 정권의 요청과도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현직 대통령이 지적하자 검찰이 즉각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사이버명예훼손에의 강경 대응을 하기 시작했고, 아울러 법원도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지속성과 파급력이 큰 정보통신망, 전파력이 강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웹페이지 등 각종 추상적인 용어를 구사하며 사이버명예훼손 사범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에 대하여 95%에 가까운 허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 적용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좀더 구체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법률규정은 변함없이 그대로인데 새로운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갑자기 과중한 형사처벌을 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종래와 달리 강

력한 처벌을 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좀 더 법적 근거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 법적 처벌근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2008년 검찰은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미네르바’ 박대성 씨를 전기통신법상 허위통신 규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전기통신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당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현재는 이 규정에서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용어의 추상성을 이유로 한 위헌결정이므로 허위사실 유포 규제 자체를 금지한 결정은 아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화된 구성요건을 새로 입법한다면 사이버공간상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는 부분적으로 재입법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통제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적 근거 없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허위사실 유포죄를 처벌하는 것은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에도 반하는 것이다. 즉,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떤 허위사실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하며, 만일 목적은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면서 형식적으로는 이를 사이버 명예훼손규정으로 처벌한다면 이는 명백히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2009년 1월 10일 '미네르바' 박 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찰청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모습
(출처 : 세계일보, 「미네르바 박대성 씨 "무인도에 떨어진 느낌"」, 2009년 3월 16일자)

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법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허위든 진실이든 사실을 적시하면 처벌될 수 있는 현재의 명예훼손 법률규정에 의하면, 진실에 기초한 비

판조차도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진실 적시에 의한 비판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한, 위선으로 얻은 기득권조차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게 되지만, 진실에 기초한 표현의 자유는 심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문제 될 수 있다. 진실과 허위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고 목소리가 크면 진실조차 허위로 고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국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벌금형으로만 처벌하고 있고, 더구나 자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조차도 실형으로 처벌한 사례는 거의 없다. 요컨대, 현행 명예훼손법제마저 개선의 여지가 큰 마당에 현재의 사이버명예훼손조항을 허위사실 유포행위 전반을 단속하기 위해 유추 또는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한 법 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

5. 과도한 사이버공간 규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이버공간 규제법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규정을 가지고 있고 또한 처벌도 엄격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각종 법안이 연속하여 제출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각종 부작용과 폐해 및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그 철저한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이른바 ‘표현의 자유’ 이념은 최대한 지켜져야 할 보호법익이다. 사이버공간의 규제를 강화하면 그 안전은 좀 더 확보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많은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상적인 규제는 이른바 ‘자율적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규제법규의 시행 이전에 먼저 네티즌 스스로 위법행위나 일탈행위를 삼가도록 노력해야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들도 스스로 자정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투자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자율규제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 사이버공간의 부작용과 일탈에 대하여 이를 무조건 강력히 규제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네티즌들과 인터넷사업자들이 자율규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자율규제를 이전보다 강화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러한 방침을 통하여 사이버공간 정화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감으로써 사이버공간을 최대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무리한 법 적용을 삼가고 불필요한 입법 남용을 자제하여 최소한의 규제에 그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수사기관의 감청행위는 적법한가?

미국에서 해커를 잡기 위한 수사기관의 해킹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을 때 법원은 수사기관의 해킹에 대하여 프라이버시 침해를 주장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검찰이 계획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허위사실 유포든 사이버명예훼손이든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직접해킹이나 감청신청 때문에 카톡이나 SNS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행위는 자칫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쉽다. 이러한 행위는 엄격한 요건하에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행위에 대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점차 지능화되고 익명화되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감청 등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수사가 불가피할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항상 고려되어야 할 것은 전자적 감시가 오남용될 경우에는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되는 경찰국가나 전체주의국가를 초래할 수도 있고, 이러한 감시방법은 지극히 위험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자적 감시가 오남용되는 경우 개인의 본질적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감청은 일반감청과 긴급감청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감청은 허가절차에 의하여 집행하는 감청을 말하고, 긴급감청이란 검사와 사법경찰관 및 수사정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과 같은 긴박한 상황으로 인하여 법원의 허가절차를 거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 없이 집행하는 감청을 말한다.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의 단속을 위하여 감청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사이버명예훼손의 단속을 위하여 감청을 하는 것도 위의 감청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효율적인 감청제도의 운용을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감청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며, 범죄수사나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허용의 범위를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7. 맺는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검찰의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계획은 만일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행위의 전반적인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른바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될 것이며, 사이버명예훼손사범의 단속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시간 네트워크감시와 같은 감청절차는 긴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결코 남

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이버공간상 허위사실 유포의 규제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본다. 허위사실이나 루머의 남발은 그것이 굳이 개인의 명예훼손에까지 이르지 않을지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에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전기통신법 규정이 용어의 추상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고 그에 따라 전기통신법상 허위통신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다시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교란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설정하여 합리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사범 관련 입법을 선행한 후에, 이를 법적 근거로 삼아 허위사실 유포 단속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사이버명예훼손사범의 단속에서도 개인이 아니라 공익성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정부 등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은 보다 제한적으로 행하는 등 관련 규정은 매우 신중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